

디자인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에 관한 고시

<소관 : 디자인심사정책과>

제정 2018. 7. 20. 특허청고시 제2018-15호

개정 2018. 12. 1. 특허청고시 제2018-27호

개정 2019. 12. 16. 특허청고시 제2019-21호

개정 2020. 4. 1. 특허청고시 제2020-8호

제1조 국내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3. 일 본(Japan)
4. 노르웨이(Kingdom of Norway),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캐나다(Canada), 칠레(Republic of Chile), 조지아(Georgia), 인도 (Republic of India), 스페인(Kingdom of Spain)

제2조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허청과 외국의 디자인업무를 담당하는 행

정기관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국가”는 세계지식재산기구(「세계지식재산기구 설립협약」 제1조에 따라 설립된 세계지식재산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자적 접근 서비스(DAS, Digital Access Service)를 통하여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송달하기로 세계지식재산기구와 합의한 국가(특허청장이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간 내에 전자적 교환방법으로 해당 우선권증명서류를 세계지식재산기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해당하는 국가를 지정한다.

1.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일 본(Japan)

제3조(재검토 기한) 특허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